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

2022. 3. 23.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
행정재경위원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안은 2022.3.14. 정택진, 박종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, 2022.3.14.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리는 것임. (의안 번호 : 2738호)

2. 제안이유

‘골목형상점가’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/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함.(안 제3조제1항제2호, 제3호)
- 나. 면적 당 점포수의 기준을 명확히 함.(별표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의2호, 제3호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
- 라. 기 타
 - 1) 개정안 : 별첨
 - 2) 조례안 예고 : 2022. 3. 15. ~ 2022. 3. 19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‘골목형상점가’ 등록 신청 시 소상공인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/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 검토 내용

-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였음.
- 이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를 개정하였음.
- 별표의 면적당 점포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인조직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까지 동의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끼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상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면적당 점포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.
-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 구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안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고드립니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3. “상인조직”이란 전통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·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·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